

의안번호	제433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현문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발 의 자 : 김현문·이정범·박병천
박용규·박재주·유상용
이윅희 의원

1. 제안 이유

충북 도내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해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자료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등 선도·교육·조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(학기별 1회)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 신설 (안 제3조제5항)
- 나. 피해·가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문 분리 및 이에 따른 문구 정리 (안 제6조)
- 다. 교육감의 가해학생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지원 및 학교장의 가해학생 선도·교육 등을 위한 사전 조치 지원 사항 신설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관계부서 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교육장은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피해·가해학생 지원)”을 “(피해학생 보호·치료·재활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하여”를 “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원”을 “치유기관 확충 및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보호와 가해학생 조치”를 “보호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가해학생 선도·교육·조치 등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·조치 등 지원을 위해

관계법령(지침을 포함한다)과 학칙에 따라 다음 방법의 사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
 2.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
-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2. 전문적 치료기관 확대
3. 가해학생·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교육장은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조(피해·가해학생 지원) <u>교육감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<u>지원</u> 3. (생 략) 4. 그 밖에 <u>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피해학생 보호·치료·재활 등 지원) -----<u>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치유기관</u> 확충 및 지원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보호</u>----- ----- <p>제7조(<u>가해학생 선도·교육·조치</u> 등 지원) ①<u>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행동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등 선제적 지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·조치 등 지원을 위해</u></p>

관계법령(지침을 포함한다)과 학칙에 따라 다음 방법의 사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과 또래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

2. 반성문 작성 등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

③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
2. 전문적 치료기관 확대

3. 가해학생·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

4. 그 밖에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 ~ 제13조 (생략)

제8조 ~ 제14조 (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

관계 법령

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(약칭: 학교폭력예방법)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21.>
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교육장(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(교사를 포함한다)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,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21., 2017. 4. 18., 2019. 8. 20., 2020. 12. 22., 2021. 3. 23.>

1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
 2. 일시보호
 3.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 4. 학급교체
 5. 삭제 <2012. 3. 21.>
 6.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2. 3. 21., 2019. 8. 20.>
-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21., 2019. 8. 20.>
-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, 2021. 3. 23.>

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21., 2021. 3. 23.>

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21. 3. 23.>

1. 삭제 <2012. 3. 21.>

2. 삭제 <2012. 3. 21.>

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2. 3. 21.>

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, 상환청구범위,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 3. 21., 2021. 3. 23.>
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

다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 5. 8.,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19. 8. 20., 2021. 3. 23.>

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3. 학교에서의 봉사
4. 사회봉사
5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6. 출석정지
7. 학급교체
8. 전학
9. 퇴학처분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3. 21., 2019. 8. 20., 2021. 3. 23.>
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

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19. 8. 20., 2021. 3. 23.>

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. 26., 2012. 3. 21., 2021. 3. 23.>

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2. 3. 21.>

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

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3. 21., 2019. 8. 20.>

-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2. 3. 21.>

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약칭: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)

[시행 2023. 9. 15.] [대통령령 제33723호, 2023. 9. 12., 타법개정]

제19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)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,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·지속성·고의성
2.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
3.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
4.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
5.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

개정 조례안에 따라 제6조(피해학생 보호·치료·재활 등 지원), 제7조(가해학생 선도·교육·조치 등 지원) 관련 사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, 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